
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시기



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확인검사 의무화



어린이집 보육실,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, 일정 규모이상 증축과 수선을 할 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원 시스템



케미스토리 QR코드



환경부의 '어린이환경과 건강포털' 케미스토리에서(www.chemistory.go.kr)에서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

「환경보건법」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

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「환경보건법」을 제정하여 2009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,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,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.

또한, 2016년 1월1일 이후(연면적 430㎡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보육실, 유치원 교실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)부터는 「환경보건법」 적용대상이 확대되므로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'환경안전관리기준'을 반드시 숙지·준수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의 의무



2009. 3. 22
2009. 3. 22 이후 설치 시설

2016. 1. 1
2009. 3. 22 이전 설치 시설

적용시기
2018. 1. 1
연면적 430㎡ 미만의 사립시설

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

「환경보건법」시행령(제16조 제1항, 별표2)

6 위생관리



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



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

$$\text{납} + \text{카드뮴} + \text{수은} + \text{6가크롬} \leq 0.1\%$$

$$\text{폼알데하이드 방산량} \leq 75\text{mg/kg}$$



4 모래(토양)

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

납	200	≤ mg/kg
카드뮴	4	
수은	4	
6가 크롬	5	
비소	25	



3 목재



시설에 다음의 방부제 사용 금지

- 1)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 1호 및 2호(A-1, A-2)
- 2) 크롬·구리·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, 2호, 3호(CCA-1, CCA-2, CCA-3)
- 3) 크롬·플루오르화구리·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(CCFZ)
- 4) 크롬·구리·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(CCB)

(예외: 2호의 도료·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한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)



1 시설물 관리

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(페인트 등)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해야 함



2 도료·마감재료

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
1) 실내·외 활동공간

$$\text{납} + \text{카드뮴} + \text{수은} + \text{6가크롬} \leq 0.1\%$$

(납은 질량분율로 0.06%이하)

2) 실내 활동공간

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	<	일반자재	0.12	mg/m ² h
			4	
			0.08	
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야 함